

# 평창군야생동물에의 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안

의 안 번 호	138
------------	-----

발의년월일 : 2004. 12. 17.

발 의 자 : 김영해의원외 6인

## I. 제 안 이 유

- 본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작물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업, 임업의 경영을 위함.

## II. 주 요 골 자

- 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 규정.(안 제3조)
- 나. 농가의 피해농지 면적기준을 규정.(안 제4조)
- 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 및 조사절차를 규정.(안 제7조)
- 라. 피해금액의 산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8조)
- 마. 피해금액 산정에 따른 피해보상의 내용을 규정.(안 제9조)

## III.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 나. 집행부 의견 : 따로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결과 : 해당없음

# 평창군야생동물에 의한농작물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등의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업,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등"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5호 내지 제5호의 2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작물등피해예방시설"이라 함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
4. "농작물등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업, 임업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5. "농가"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8호를 말한다.

제3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4조(농가의 피해농지 면적기준) 농가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농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000m<sup>2</sup>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총 피해보상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4. 각종 법령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등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등피해보상금 산정심의 및 지급과 관련된 사항
2. 농작물등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절차) ①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발생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 접수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현장조사는 피해지역 이상 또는 반장, 피해농가 입회하에 읍면장이 정밀 조사한다. 이 때 피해입증 책임은 농가에게 있다.

제8조(피해액 산정) 피해액 산정은 작물별, 생육단계별 단위면적당 적정 기준가격을 참고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피해보상의 내용) ①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상한액을 규칙으로 정하여 보상한다.

② 보상금은 피해액의 70%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규칙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關係法令 拔萃

## □ 지방자치법

제1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보호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시·도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농작물"이라 함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록비작물·원예작물·균이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의2. "산림작물"이라 함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 조경수, 산림버섯, 산채류, 야생화 기타 임산물을 말한다.

6~7. (생략)

8. "농가"라 함은 그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가계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을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단위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